

## 리모델링 허가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 주 소	① 대표자 (명칭)	생년월일 (인가 또는 고유번호)
	(전화번호: )	

단지개요	위치	(단지명: )		
	세대수	총수 및 동수	총동, 총동	총동, 총동

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	시설종류	[ ] 공동주택	[ ] 부대시설	[ ] 복리시설
	건축면적	m <sup>2</sup>	② 연면적	m <sup>2</sup> ( 바닥면적: m <sup>2</sup> )
	③ 주용도		④ 부속용도	
	공사면적	m <sup>2</sup>	총수	지하( ) 층, 지상( ) 층

⑤ 총사업비	천원 (※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·택지비는 제외합니다)		
착공예정일	년 월 일	사용검사예정일	년 월 일

「주택법」 제6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 
특별자치도지사  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- 첨부서류
1.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. 다만,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(기존 내력벽, 기둥,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),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.
  2.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「주택법」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3. 세대를 합치는 행위(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 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
  4. 「주택법」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
  5. 「주택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
  6.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

#### 유의사항

「주택법」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#### 작성방법

1.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.
2.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·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.
3. ③·④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.

#### 처리절차

